



금융위원회

보도참고자료

- 생산적 금융
- 신뢰받는 금융
- 포용적 금융

보도 배포시 배포 2017.9.29(금)

책 임 자	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주홍민(02-2100-2970) 금융위 FIU기획협력팀장 손성은(02-2100-1730)	담 당 자	김민하 사무관 (02-2100-2972) 이영민 사무관 (02-2100-1722)
	국조실 금융정책과장 이등엽(044-200-2190)		김정훈 서기관 (044-200-2191)
	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고광희(044-215-2750) 기재부 외환제도과장 이형렬(044-215-4750)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송진혁(044-215-4230)		김채윤 사무관 (044-215-2758) 유예림 사무관 (044-215-4751) 조윤석 사무관 (044-215-4232)
	공정위 특수거래과장 한경종(044-200-4430)		정은애 사무관 (044-200-4438)
	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박성훈(02-2110-3167)		김봉진 검사 (02-2110-3759)
	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천지현(02-2110-1567)		황선철 사무관 (02-2110-1525)
	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한경수(044-204-3202)		김필식 사무관 (044-204-3222)
	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장우성(02-3150-1605)		김상순 팀장 (02-3150-0252)
	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차현진(02-750-6615)		김정규 팀장 (02-750-6639)
	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 최성일(02-3145-7420)		김용태 팀장 (02-3145-7425)
	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대응센터장 김주영(061-820-1830)		윤석웅 팀장 (02-405-5563)

제목 :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「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」 개최

- ◆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「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」 를 개최
 - ◆ 최근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, 지난 9.1일 발표한 '가상통화 대응방향' 추진현황을 점검
- 〈 최근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 〉
- ✓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
 - ✓ 금전대여·코인마진거래 등 신용공여 금지(현행법상 위반여부 조사제재) 및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영업·업무제휴 등 전면차단
- 〈 추진현황 점검 〉
- ✓ 「가상통화 합동단속반」 구성, 집중단속 실시중
 - ✓ 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,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체계 구축
 - ✓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,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,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 등 관련법 개정안 마련

I. 회의개요

- 금일 '17.9.29.(금) 10: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「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」를 개최*

* 금융위, 국조실, 기재부, 공정위, 법무부, 방통위, 국세청, 경찰청, 한은, 금감원, 인터넷진흥원 관계자

- 최근 국내외 시장·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, 지난 9.1일 발표한 '가상통화 대응방향'의 관계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

II. 주요내용

-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,
 -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,
 -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,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
- 또한, 최근 시중자금이 비생산적·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,
 - 이에 따라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, 다음과 같은 대응방침을 논의함

1. 최근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

- ① (ICO 금지) 디지털토큰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ICO(Initial Coin Offering)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최근 국내에서도 ICO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
 - ① 지난 9.1일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침을 발표
 - ② 그러나, 실제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·배당을 부여하는 방식(속칭 '증권형') 뿐만 아니라,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(속칭 '코인형')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

- 이에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,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
- 중국('17.9.4일)·미국('17.7월)·싱가포르('17.8월) 등 주요국에서도 ICO 관련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고를 발표하는 등 ICO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,

➔ 기술·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

< 주요국 ICO 규제 사례 >

- 미국 증권거래위(SEC)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토큰발행을 증권법상 증권발행으로 보고 증권법 규제를 적용('17.7월)
- 중국 인민은행 등은 ICO를 금융사기·다단계 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행위로 규정하고, ICO의 전면금지 발표('17.9.4일)
- 싱가포르 통화청(MAS, '17.8월), 홍콩 금융감독원(SFC, '17.9.5일)도 증권발행 형식의 ICO의 경우 증권법에 따른 규제방침을 발표
- 미국 증권거래위(SEC, '17.8월), 싱가포르 통화청(MAS, '17.8월), 말레이시아 증권위(SC, '17.9.7일), 영국 금융감독청(FCA, '17.9.12일) 등은 ICO 관련 투자경고

② (신용공여 금지)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(속칭 '코인 마진거래')하는 등 사실상 신용공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됨

- 이와 같이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행위는 투기를 조장하고, 소비자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큼

➔ 지난 9.1일 대책에서 밝혔듯이,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,

- 규제입법 이전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, 위반시 엄정 제재할 계획

- 한편, 가상통화의 투기적 거래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취급업자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영업·업무제휴 등을 금지(관련 실태조사 추진)

- 아울러, 가상통화 거래업에 제도권 금융회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

2. 추진현황 점검

- ① (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처벌)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거래, 유사수신·다단계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, 각각 마약류 관리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·방문판매법 위반 등으로 기소(검찰)

< 가상통화 관련 최근 범죄 기소사례 >

- '17.5~8월 '00코인' 투자금 명목으로 212억원을 편취한 업자 등 4명을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로 기소('17.8~9월)
- '16.8월~'17.8월 대마 1.25kg을 70여회에 걸쳐 비트코인으로 판매한 업자 등 4명 구속기소('17.9월)

- 「가상통화 합동단속반」을 구성하여 가상통화 관련 다단계·유사수신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주만에 10건 적발, 20명 검거(9.1~9.15일, 경찰·금감원)

< 가상통화 관련 최근 검거사례 >

- 매출실적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며 실물거래가 되지 않는 가상통화 판매 명목으로 투자자 1,000명으로부터 250억 상당을 수신한 무등록 다단계 상위사업자 등 4명 검거(구속 1명)

- 경찰청(17개 지방청)·금감원(11개 지원)간 지역별 핫라인을 구축하여 범죄정보를 공유하고,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
- 다단계공제조합(직접판매·특수판매공제조합)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설치하는 등 집중제보기간을 운영중(7.24일~)이며, 현재까지 제보된 범죄혐의가 있는 4개 업체를 신속히 수사의뢰(공정위)

- ② (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제재 등)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·제재하고, 보안조치 강화 유도(방통위)

- 신고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조사중이며,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*

*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3% 이하 과징금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가능

-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 (9월말~, 방통위·과기정통부 공동)

③ **(이용자 확인)**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**이용자 본인확인 프로세스***,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**자율규제(안) 마련** 관련 의견을 수렴
(9월 중순, 은행권·가상통화 취급업자 합동 회의 개최, 금감원)

*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·출금 가능하도록 통제, 이용자 1인 1가상계좌 부여 원칙 적용, 은행의 가상통화취급업자 실사기준 마련 등

** 은행권 등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20여개로 (잠정)파악하였으나, 추가 검증·지속 보완 필요

④ **(유사수신 등 규제)**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 규제 명확화, 처벌 강화를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 마련
(가칭 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’, 금융위)

○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조항 정비·확대,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및 몰수·추징 규정 신설

○ ‘가상통화거래행위*’를 규정하고, ICO·신용공여·시세조종·표시광고 등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

* (예)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가능한 증표를 발행·보관·관리·취득·교환·매매·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행위

➔ 유사수신행위등규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심의·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

⑤ **(자금세탁방지)** 은행권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개설·고객확인 현황 및 의심거래 유형을 추가로 파악하고(금융위),

- 은행권에 고객확인·의심거래보고를 강화하도록 지도(공문시행, 9.28일)

○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집금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테마검사도 실시할 예정('18.1월, 금감원)

○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를 위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, 연내 국회심의·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

- ⑥ (공동점검체계 운영) 금감원이 조사한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공정위·검찰·경찰·국세청 등과 상시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 구축
- 은행권 협조를 통해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1차 조사하고, 파악된 정보를 공정위·국세청 등에 통보(금감원)
 - ➔ 향후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완료시 취급업자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(12월)
 - 우선 대형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심사하고 시정할 예정(공정위)

※ 별첨 :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
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겠습니다 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① 매우 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

- 가상통화는 그 가치가 수요·공급에 따라 변동하며, 정부·금융 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
- 또한,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
-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본인의 책임 하에 거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

② 유사수신·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주의

- 최근 유사코인 투자시 고수익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 하여 유사수신·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
- 비트코인 등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반면,
-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
-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매 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이며,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요망됨

* 수원지방검찰청 배포 보도자료 참조('16.6.20일, '16.7.27일, '17.6.22일)

③ 해킹 및 암호키(Private Key) 유실 위험에 노출

- 이용자가 가상통화를 직접 보관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는 경우에도 가상통화 보관지갑 해킹으로 이용자 자산이 탈취될 위험이 존재함
- 또한, 가상통화 거래시 필요한 암호키(Private Key)가 유실되는 경우 해킹 없이도 이용자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음